



원산지관리사 핵심요약집 개정·정오사항 안내

(초판 1쇄. 2025.02.15)

※ 공통사항 ※

■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명칭 변경

- 기획재정부 → 재정경제부
- 기획재정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차관 → 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차관
- 기획재정부령 → 재정경제부령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산업통상부(장관)
- 통계청(장) → 국가데이터처(장)

제1과목. FTA협정 및 법령

교재 페이지	기존사항	정오사항
영문본 우선 적용 협정 "필리핀 삭제"		
P. 16 협정별 국문본 대비 영문본 우선적용 규정유무	칠레 · 페루 · 콜롬비아 · 중미 · 싱가포르 · 아세안 · 인도 · 중국 · 베트남 · 캄보디아 · 인도네시아 · EFTA · 터키 · 이스라엘 · 필리핀	칠레 · 페루 · 콜롬비아 · 중미 · 싱가포르 · 아세안 · 인도 · 중국 · 베트남 · 캄보디아 · 인도네시아 · EFTA · 터키 · 이스라엘

교재 페이지	기존사항	정오사항
	국문본과 영문본 동등 협정 "필리핀 추가"	
P. 16 협정별 국문본 대비 영문본 우선적용 규정유무	미국 · 캐나다 · 호주 · 뉴질랜드 · EU · 영국	미국 · 캐나다 · 호주 · 뉴질랜드 · EU · 영국 · 필리핀

교재 페이지	기존사항	개정사항
		호주측 기관발급처 추가
P. 26 호주 측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호주상공회의소 · 호주산업협회 · International Export Certification Services · Trade Window Origin Pty Limited	호주상공회의소 · 호주산업협회 · International Export Certification Services · Trade Window Origin Pty Limited · WiseTech Global Pty Ltd

교재 페이지	기존사항	개정사항
		협정상 표현과 FTA특례법상 표현 병기
P. 27 필리핀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정오)	발급일 또는 서명일부터 12개월	협정: 발급일 또는 작성일부터 12개월 FTA특례법: 발급일 또는 서명일부터 1년 (공통규정)

제2과목. 원산지결정기준

교재 페이지	기존사항	
P. 207 원산지결정기준 부가가치비율 계산 공식 (BD법, MC법 수정)	BD(공제법)	$RVC = \frac{\text{상품가격} - \text{원산지재료비}}{\text{상품가격}} \times 100$
	MC법	$RVC = \frac{\text{비원산지재료비}}{\text{순원가}} \times 100$
	정오사항	
	BD(공제법)	$RVC = \frac{\text{상품가격} - \text{비원산지재료비}}{\text{상품가격}} \times 100$
	MC법	$MC = \frac{\text{비원산지재료비}}{\text{공장도가격(EXW)}} \times 100$

교재 페이지	기존사항	정오사항
P. 208 원산지결정기준 협정별 부가가치기준 비교표 (캐나다 수정)	캐나다 협정 부가가치 : RVC	캐나다 협정 부가가치 : MC

제4과목. 수출입통관

교재 페이지	기존사항	개정사항
		타 법률 개정에 따른 근로자의 날 명칭 변경
P. 243 2.(2) 기한의 계산(연장)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토요일 및 일요일 ②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③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이하생략)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토요일 및 일요일 ②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③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 (이하생략)

교재 페이지	기존사항	개정사항
		연장규정 및 유효기간 범위 확대
P. 254 특관자간 거래물품의 과세가격사전심사 유효기간	3년	3년 *특관자간 거래물품의 과세가격 사전심사의 경우 결정통보일부터 <u>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말일</u> (사업연도 말일 도래 30일전에 2년 연장 신청시 <u>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u> <u>사업연도의 말일</u>)

교재 페이지	기존사항	개정사항
		기준금리 및 시장금리 변동에 따른 이자율 변경
P.262 1. 보정이자 이자율 개정	보정이자 연 1천분의 35 (부정 → 가산세)	보정이자 연 1천분의 31 (부정 → 가산세)

교재 페이지	기존사항	개정사항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10%) 감면 신설
P. 263 (2) 신고불성실 가산세 감면	① 특수관계자간 거래물품 과세가격 사전심사 결과 통보받은 후 2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 ② 감면대상 및 감면율 잘못 적용으로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	①-② (기존 동일) ③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의 통지를 받은 경우로서 해당 사전심사 신청 물품 및 그와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가목에 따른 기간에 신고납부한 세액을 통지된 품목분류를 적용하여 나목에 따른 기간에 수정신고하는 경우 가. 사전심사 신청일부부터 사전심사 결과 통지일 전날까지 나. 사전심사 결과 통지일부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교재 페이지	기존사항	개정사항
		기준금리 및 시장금리 변동에 따른 이자율 변경
P.267 2. 관세환급금 환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과다납부·착오납부·이중납부에 대한 환급 ② 지체없이 결정, 30일 이내 환급 ③ 환급가산금 지급 (연 1천분의 35), 국가·지자체 수입 등은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과다납부·착오납부·이중납부에 대한 환급 ② 지체없이 결정, 30일 이내 환급 ③ 환급가산금 지급(연 1천분의 31), 국가·지자체 수입 등은 제외

교재 페이지	기존사항	개정사항
		국내 배송지가 물품수신인 주소지와 다른 경우 탁송품운송업자가 국내 배송업자에게 실제 배송주소 제출업무 위탁 가능
P. 275 2. 탁송품 특별 통관	<p>물품가격 미화 150불 (한-미 FTA 미화 200불)이하</p> <p>※ 통관목록상 물품수신인의 주소지가 아닌 곳에 배송한 경우 탁송품운송업자는 <u>배송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실제 배송주소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u></p>	<p>물품가격 미화 150불 (한-미 FTA 미화 200불)이하</p> <p>※ 통관목록상 물품수신인의 주소지가 아닌 곳에 배송한 경우 탁송품운송업자는 <u>배송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실제 배송주소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u></p> <p>다만, 탁송품 운송업자와 실제 배송한 자가 다른 경우 탁송품 운송업자는 실제 배송한 자로 하여금 세관장에게 실제 배송한 주소지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p>